

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법률안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국가 등의 책무, 적용 범위, 임도의 종류 등을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).
- 산림청장은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, 시·도지사는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,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, 임도 노선 지정·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.
-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·사용 근거를 마련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-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을 규정함(안 제20조).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·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(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).

II. 검토의견

1.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 명확화(안 제26조)

- 안 제26조는 임도관리자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, 임도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임도를 파손한 자 등에 대하여 구조물의 철거 등의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.
- 다만 안 제26조제2호는 임도에서 제한되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규정에 담고 있어 문맥이 맞지 않고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보임.
- 이에 해당 내용을 각 호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.

<안 제26조에 대한 수정의견>

제정안	수정의견
제26조(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조물의 철거, 물건의 이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제26조(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	1. (제정안과 같음)
2. 제2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파손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임도 표지 또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 또는 옮	2. 제25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통행을 방해한 자

제정안	수정의견
<u>긴 자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3. 제25조제2호에 따른 임도를 파손 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4. 제25조제3호에 따른 임도 표지 또 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하거나 옮 긴 자

-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전국임도
종합계획 수립 시 산림청장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·도지사
‘통합특별시장’을 추가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
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